

나트륨·당류 저감 표시기준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104호(2021. 12. 10., 제정)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-42호(2022. 06. 10., 일부개정)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-65호(2023. 10. 05., 일부개정)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-63호(2024. 10. 17., 일부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나트륨·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해 나트륨·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식품 유형과 나트륨·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.

1. “저감 표시”란 나트륨·당류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“덜, 감소, 라이트, 줄인, 적은” 및 이와 유사한 용어로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·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 단위와 비교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자사유사제품”이란 같은 제조회사에서 생산하거나 같은 유통전문판매업에서 판매한 식품 유형 및 세부분류, 제조 방법, 성상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. 다만, 수출 전용 및 품목 제조 신고 이후 생산 실적이 없는 제품은 제외한다.
3. “비교단위”란 제품 간 나트륨·당류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·당류를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.
4. “세부분류”란 나트륨·당류 평균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「식품의 기준 및

규격」에 따른 식품 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고시에 따라 나트륨·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식품 유형과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세부분류는 별표와 같다.

1. 나트륨 저감 표시

가. 유탕면

나. 건면(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)

다.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, 김밥, 주먹밥, 도시락(정찬형),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

라. 즉석조리식품 중 국·탕, 찌개·전골, 냉동밥 또는 도시락(정찬형)

마. 만두

바. 빵류 중 피자

2. 당류 저감 표시

가. 가공유

나. 발효유

다. 농후발효유

라. 빵류 중 카스텔라, 케이크, 머핀 또는 파이

마. 아이스크림

바. 아이스밀크

사. 샤베트

아. 빙과

자. 액상커피(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)

차. 유산균음료

제4조(표시기준)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“덜, 감소, 라이트, 줄인, 적은” 및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나트륨·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다.

1. 세부분류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10% 이상 저감한 경우. 이 경우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·당류 함량의 평균값을 대상으로 산출한다.

2. 세부분류별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당 25% 이상 저감한 경우 (다만,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·당류 함량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.)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.

③ 비교 단위는 1회제공량당으로 한다. 다만,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식품의 비교단위는 단위 내용량으로 한다.

제5조(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)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을 따른다.

제6조(재검토 기간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.)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
부칙<제2021-104호, 2021. 12. 10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행정규칙의 개정)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지1 아.3) 나)에 (4)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4) (1)~(3)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양성분과 식품유형에 대해서는 영양 성분 비교강조표시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<제2022-42호, 2022. 06. 10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2023-65호, 2023. 10. 05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2024-63호, 2024. 10. 17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행정규칙의 개정)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별지1 아.3) 나)에 (4)항 중 “특정 영양성분”을 “나트륨·당류 등 특정 영양성분”으로 한다.

[별표]

나트륨·당류 저감 표시 식품의 세부분류(제3조 관련)

분류	식품유형	세부분류 (포장형태 등)	해당 제품형태(예시)
나트륨	유탕면	국물형* (용기형, 봉지형)	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라면
		비국물형** (용기형, 봉지형)	비빔면, 볶음면 등
	건면 (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)	국물형*	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건면
		비국물형**	비빔냉면, 쫄면 등
	즉석섭취식품	삼각김밥	김으로 싸 주먹밥 등
		김밥	밥 등의 내용물을 김으로 말아서 만들거나 유사 형태로 만든 음식
		주먹밥	밥을 뭉친 형태로 만든 음식으로 주먹밥, 유부초밥 등
		도시락 (정찬형)	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 식사 제품 * 덮밥, 비빔밥, 국밥형, 조리면, 밥이 없는 형태 등 제외
		햄버거	둥근 빵에 육류, 채소 등을 끼워 만든 제품 (치즈버거 등) * 밥버거 제외
		샌드위치	얇게 썬 빵 조각 사이에 소스 등을 바르고 육류, 달걀, 치즈, 채소 등을 끼워 만든 제품 * 랩 샐러드, 토르티야 등 제외
	즉석조리식품	국, 탕 (국물형, 비국물형)	소고기미역국, 무국, 육개장, 갈비탕 등
		찌개, 전골 (국물형, 비국물형)	된장찌개, 김치찌개, 만두전골, 곱창전골 등
		냉동밥	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데워서 섭취할 수 있는 볶음밥, 비빔밥 등(덮밥류, 국밥류, 도시락류 제외)
		도시락 (정찬형)	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 식사 제품 * 덮밥, 비빔밥, 국밥형, 조리면, 밥이 없는 형태 등 제외
	만두	-	식육, 채소류 등의 혼합물을 만두피 등으로 성형한 것(고기손만두, 채소 만두 등)
	빵류	피자	반죽 위에 육류, 치즈, 채소, 소스 등을 얹어 구운 제품
당류	가공유	-	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(바나나맛 우유, 딸기 우유 등)
	발효유	-	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% 이상의 것

	농후발효유	-	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% 이상의 호상 또는 액상의 것
	빵류	카스텔라	거품을 낸 달걀에 밀가루, 설탕 등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스펀지 형태의 속 모양을 가진 제품
		케이크	밀가루, 달걀, 버터, 우유, 설탕 등을 넣어 구운 제품(롤케이크, 파운드케이크 등)
		머핀	밀가루, 달걀, 우유, 설탕, 베이킹파우더 등을 넣어 컵 모양으로 구운 제품
		파이	밀가루 반죽 사이에 육류, 과일 등을 채워 구운 제품
	아이스크림	-	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6% 이상, 유고형분 16% 이상의 것
	아이스밀크	-	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2% 이상, 유고형분 7% 이상의 것
	샤베트	-	아이스크림류이면서 무지유고형분 2% 이상의 것
	빙과	-	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
	커피	액상커피 (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)	유가공품에 커피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커피 고형분이 0.5% 이상인 제품
	유산균음료	-	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가공한 것

* (국물형) 조리 시, 국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분말스프 등을 첨가하여 불리거나 끓여서 섭취하는

제품 또는 제품에 있는 국물 또는 분말스프 등을 희석한 국물을 익힌 면과 함께 섭취하는 제품

** (비국물형) 조리 시, 국물을 버리고 불리거나 익힌 면에 분말스프 등을 첨가하여 섭취하는 제품

*** (빵류 세부분류) 제품명을 기본으로 분류하되, 형태, 원재료, 성상, 제조 방법 등 제품별 특징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세부 분류 적용